#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197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10.

발 의 자:서일준・강대식・金炳旭

김용판 · 김학용 · 박 진

박형수 · 안철수 · 이주환

이채익 · 조명희 · 홍문표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,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,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·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육성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%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·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 우 열악한 상황이며,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 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 함.

이에 항공기의 인증·정비 지원,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·운영, 유망기업의 육성,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

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3 신설 등).

### 법률 제 호

#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0까지를 각각 제69조의4부터 제69조의11까지로 하고, 제6장에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9조의3(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활성화)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· 연구
- 2.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
- 3.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·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
- 4.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
- 5.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 설의 구축·운영
- 6.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,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
- 7. 그 밖에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의6(종전의 제69조의5)제1항 중 "제69조의4"를 "제69조의5"로 한다.

제69조의8(종전의 제69조의7) 중 "제69조의4제1항제4호"를 "제69조의5 제1항제4호"로 한다.

제69조의11(종전의 제69조의10)제1항 중 "제69조의4"를 "제69조의5"로 한다.

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임직원
- 6.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임직원

제84조제2항제20호의2 중 "제69조의9제1항"을 "제69조의10제1항"으로하고, 같은 항 제20호의3 중 "제69조의10제3항"을 "제69조의11제3항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69조의3(항공기정비 관련 항공
	산업의 활성화) 국토교통부장관
	은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
	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	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	1.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
	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
	연구
	2.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
	<u>증 지원</u>
	3.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
	및 전문인력의 양성
	4.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
	<u>원 및 육성</u>
	5.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
	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
	인증지원시설의 구축・운영
	6. 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
	발전을 위한 국제협력, 국제공
	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
	<u>7. 그 밖에 항공기정비 관련 항</u>
	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
	한 사항
<u>제69조의3</u> · <u>제69조의4</u> (생 략)	<u>제69조의4</u> · <u>제69조의5</u> (현행 제69

제69조의5(운영위원회)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・③ (생 략)

제69조의6 (생략)

제69조의7(비용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 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<u>제69조의8</u> · <u>제69조의9</u> (생 략)

제69조의10(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조의3 및 제69조의4와 같음)
<u>제69조의6</u> (운영위원회) ①
제69조의5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<u>제69조의7</u> (현행 제69조의6과 같
<u>ㅇ</u> )
<u>제69조의8</u> (비용의 보조 등)
<u>제6</u> 9조의5제1항제4호
<u>제69조의9</u> · <u>제69조의10</u> (현행 제6
9조의8 및 제69조의9와 같음)
<u>제69조의11</u> (조합의 재무건전성 유
지 등) ① <u>제69</u>
조의5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⑤ (생략) <신 설>

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일부개정법률

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| 제7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

- ⑤ (현행과 같음)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 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항 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제7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7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 련 기관 • 단체 등의 임직원
- 6.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 사하는 조합 또는 항공 관련 기관 · 단체 등의 임직원

# 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20. (생 략) 20의2. <u>제69조의9제1항</u>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・방해

20의3. 제69조의10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

21. ~ 24. (생 략)

또는 기피한 자

③ • ④ (생 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20. (현행과 같음)
20의2. <u>제69조의10제1항</u>
20의3. <u>제69조의11제3항</u>
21. ~ 24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형행과 같음)